

소규모 합병 및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씨티알(이하 "당사")는 2026년 2월 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주식회사 제이에스테크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본건 합병의 당사회사

가. 존속회사 : 당사(본점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551)

나. 소멸회사 : 주식회사 제이에스테크(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송정안2길 29)

2. 합병비율: (주)씨티알: (주)제이에스테크 = 1.00: 0.00 (당사는 제이에스테크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

3. 합병방법: 주식회사 씨티알이 주식회사 제이에스테크를 흡수합병함.

4. 합병기일: 2026년 4월 1일 (오전 00시 00분)

5. 당사와 (주)제이에스테크 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6년 2월 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2026년 2월 9일 ~ 2026년 2월 2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6년 2월 25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551 주식회사 씨티알 재무회계팀 한성욱 팀장(seongwook.han@ctr.co.kr)에게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6년 2월 9일

주식회사 씨티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551(성산동)

대표이사 이동욱